

정 관

2013년 2월 25일 제정
2014년 3월 27일 개정
2015년 3월 26일 개정
2016년 6월 23일 개정
2018년 3월 15일 개정
2022년 4월 22일 개정
2023년 4월 6일 개정
2024년 3월 28일 개정

구 성

전 문

제1장 총 칙 (제1조 ~ 제9조)

제2장 조합원 (제10조 ~ 제16조)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7조 ~ 25조)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6조 ~ 제42조)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3조 ~ 제56조)

제6장 사업과 집행 (제57조 ~ 제60조)

제7장 회 계 (제61조 ~ 제66조)

제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제67조 ~ 제70조)

부 칙

전 문

순천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과 협동하며, 동시에 보건의료를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으며, 협동조합 정신에 따라 자발적이고 민주적이며,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훈련, 조합간의 협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은 암과 고혈압, 당뇨 등 주요 질환의 발생빈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과 노인성질환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의 의료체계가 치료위주의 공급구조에 치우쳐 새로운 보건의료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비의 급증을 가져와 우리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병의원의 과잉 공급과 투자는 과잉 진료로 이어져 고비용 저효율의 의료체계가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의료비 부담은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상호 호혜의 협동조합정신으로 우리의 건강권을 실현하고, 행복한 지역을 가꾸기 위해 순천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다. 의료는 영리의 수단이 아니라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임을 인식하고, 의료를 통해 우리를 있게 해주는 모든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고 이웃과 협동하는 공동체적 삶을 만들고자 한다.

제 1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순천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순천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로 돕는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전문에서 밝힌 것처럼 의료생협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합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활동을 실시하고, 환자 권리 증진에 힘쓰며, 복지사업과 조합원 모두의 문화적 경제적 개선향상을 도모하여, 협동조합 간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가꾸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실현하고자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조합의 주된 주사무소는 전라남도 순천시 봉화로 62(조곡동)에 두며, 이 조합의 지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순천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순천생협요양병원: 전라남도 순천시 봉화로 62(조곡동) <2023.4.6. 개정>

제4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보성군, 구례군 일원으로 한다.

제5조[광고방법]

①조합의 광고는 조합의 게시판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라남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②제 1항의 광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 또는 전자메일 또는 문자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 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는 그 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관여 금지]

①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 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은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자연 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 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나 근무지를 가진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가입]

-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 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 11조 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합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 ① 조합원은 조합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 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금치산자

제15조[제명]

-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공금물자 대금 또는 이용료의 지불을 태만하거나 최고를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신용을 상실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 ②조합은 제 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제 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 ④조합은 제명 결의가 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 조합원의 지분환급 청구권]

- ①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할 수 있다.
 1.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탈퇴 규정에 의해 탈퇴된 경우에는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되는 금액
 2. 제15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을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되는 금액
 3. 제15조 1항의 3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
- ②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 ③제 1항에 따른 청구권을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 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7조[출자]

- ①조합원은 1구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1좌의 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2022.4.22. 개정> <2024.03.28. 개정>
- ②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2023.4.6. 개정>
- ③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 ④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 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 ①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연월일
 4. 출자금 납입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년 월 일
- ②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 지정게시판, 우편, 전자우편, 팩시밀리, 휴대전화 문자나 SNS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지분의 양도와 취득 금지]

- ①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 ②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 ③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④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 ⑤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0조[출자좌수의 감소]

- ①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 ②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21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 ①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비를 징수 할 수 있다.
- ②제 1항의 조합비, 경비,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 ③조합원은 제 1항에 따른 조합비, 경비, 사용료, 수수료 등을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2조[과태금]

- ①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에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 할 수 있다.
- ②조합원은 제 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③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법정적립금]

- ①조합은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②제 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임의 적립금]

- ①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 23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임의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②임의 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25조[기부금]

- ①조합은 본 조합의 목적에 찬성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을 받을 시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기부금을 납입한 자는 기부금 납입을 이유로 조합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조합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 31까지 공개한다.
- ④기부금은 조합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수혜자는 불특정다수로 한다.(기부금)
- ⑤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

제 4장 총회와 이사회

제26조[총회]

- ①조합은 총회를 둔다.

-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7조[대의원총회]

- ①조합원의 수가 4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 ②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④대의원의 정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⑤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⑦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대의원 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9조[임시총회]

- ①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②이사장은 제 1항 제2호(제 53조 규정에 따른 해임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2024.03.28. 개정>
- ③제 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④감사가 제 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0조[총회의 소집절차]

- ①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 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 48조 제 3항이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1조[총회의 의결사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2조[총회의 의사]

- ①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총회는 제 29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3조(합병.분할 및 해산의 의결) 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의결권 및 선거권]

- ①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 ②조합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제35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원본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제2항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에 그 찬부 또는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여 총회 전에 동 서면이 조합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 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6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

의 조합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7조[총회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총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총회운영 규약으로 정한다.

제38조[총회의 회기연장]

- ①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 30조의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이사회]

- ①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 ②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둘 수 있다.
-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이사회는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문자 또는 SNS를 통해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23.4.6. 개정>
- ⑤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⑥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회회의 의결사항]

-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소요자금의 차입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6.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7.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8. 이사장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10. 임원의 직무정지에 관한 사항
- ②이사회는 제 57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이사회회의 의사]

-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 ③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 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2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5장 임원과 직원

제43조[임원의 정수]

-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 이상 20인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 ③ 서비스수혜자 또는 관련단체나 연계기업 대표 1인 이상을 반드시 이사로 둔다.

제44조[임원의 선임]

-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6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7조[임원의 겸직금지]

-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 ③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④ 임직원은 정당의 지역대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48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 ②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③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임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 ④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49조[감사의 직무]

- ①감사는 연 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②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 ③감사는 이사가 법령, 정관, 규약, 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실시는 2인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0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1조[임원의 책임 등]

- ①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에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③임원이 허위의 결산보고 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 ④제2항의 행위가 이사회에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회도 제2항의 책임이 있다.
- ⑤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이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회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2조[임원의 실비 변상 등]

- ①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53조[임원의 해임]

- ①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에 대하여 총회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4조[서류비치의 의무]

- ①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화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④이사장은 제3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거부하지 못 한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조합원의 개인정보 및 조합의 영업상의 비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로 하며 이 경우에는 서류의 열람과 사본의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제55조[고문과 고문변호사]

- ①조합은 이사회 결의로 학식과 경륜 있는 사람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②이사회 결의로 변호사 중에서 조합의 법률자문을 위해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 ③고문과 고문 변호사의 임기는 추대당시의 이사의 임기와 같다.
- ④고문과 고문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할 경우 여비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자문위원회]

- ①조합은 이사회 결의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자문위원회에는 의료인의 참여를 보장한다.
- ③자문위원은 구성 당시의 이사의 임기와 같다.
- ④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이사회에서 정할 경우 여비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장 사업과 집행

제57조[사업의 종류] 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료보건 활동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 가. 의료사업 및 의료기관 개설 운영(의원,한의원,치과,요양병원,검진센터,장례식장,병원)
 - 나. 노인복지사업 및 장기요양기관, 재가 장기요양기관 운영
 - 다. 장애인 복지사업
 - 라. 평생교육원의 설치 운영
 - 마. 보육사업
 - 바. 재활사업
 - 사. 조합원 건강증진사업 등 다중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
 - 아. 조합원의 운동 및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시설
2. 보건 교육 문화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 가. 보건예방 교육사업
 - 나. 생활개선 문화사업
 - 다. 조합에 대한 교육 홍보사업
 - 라. 조합 활동에 관련된 조사 연구사업
 - 마. 지역 내 의료인, 의료기관과 연대 및 협조사업

3. 건강증진이나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거나 가공 공급하는 사업
4. 조합원 간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활동
5. 전 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공공단체가 위탁한 사업
7. 협동조합간의 협동사업
8.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 및 서비스의 제공

제58조[협력의료기관]

- ①조합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중에서 협력 의료 기관을 지정하고, 지역 보건의료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 ②협력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내용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9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 ①이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는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 1)조합은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조에 따른 응급환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해당 조합의 사업구역에 주소, 거소, 사업장 또는 근무자가 있는 자
 - 2)「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 3)조합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한 보건, 복지활동과 생활개선 운동의 경우
 - 4)공공기관 · 사회단체 등이 공익 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5)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
 - 6)기타 법령에 의거한 경우
- ②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조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60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 ①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장 회계

제61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2조[회계]

조합의 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을 특별회계로 한다.

제63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 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 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4조[손실금 보전]

조합은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회계연도 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5조[잉여금의 배당금지 및 이월]

①조합은 제64조에 따른 손실의 보전과 제 23조 내지 제 24조의 적립금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도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다.

②조합은 제64조에 따른 보전과 제 23조 내지 제 24조의 적립금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6조[이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이익잉여금의 2/3이상의 다음의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

1. 사업 확장, 시스템 구축 및 연구개발 등 사업을 위한 재투자
2.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용
3.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사업 및 기부
4. 기타 사회적 기여 사업

제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제67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8조[해산사유]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 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69조[청산인]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②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70조[청산 잔여재산의 분배금지 및 처리]

- ①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도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
- ②조합의 청산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하고, 나머지 잔여 재산은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청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024. 3. 28.

순천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라남도 순천시 봉화로 62(조곡동)